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 기간에 걸쳐 전매제한 및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이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대위변제 및 해당 주택의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로 대응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에는 해당 주택의 경매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에 걸쳐 전매가 제한되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과는 달리 금융기관 등이 주택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매제한 기간에도 경매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00.00~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생략)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6. ----- 제6호----- ----- ----- ----- -- 말한다)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